

불법주·정차 단속완화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
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자체 운영요원 배치 관리를 조건으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불법주·정차 단속완화구역 지정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9월 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행정예고 내용

: 불법주·정차 단속완화구역 지정

2. 관련근거

: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3. 행정예고 목적

: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자체 운영요원 배치 관리를 조건으로 운영하는 불법주·정차 단속완화구역 지정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3. 9. 18.(월) ~ 2023. 10. 9.(월) (22일간)

5. 행정예고방법 :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게시

6. 행정예고 대상 : 불법주·정차 단속완화구역 지정

구 분	행정동	구 간	운영시간	비 고
1	을지로동	마른대로 6 ~ 마른대로 14 수표로 20 ~ 수표로 34	일요일 08:00 ~ 17:00	
2	신당5동	퇴계로88길 30 ~ 퇴계로88길 20	일요일 08:00 ~ 17:00	

7. 의견제출방법

가. 본 행정예고(공고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)를 서울 중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전송 후 유선 연락)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, 연락처 등
- 3) 기타 필요사항 등
- 4) 의견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전송 후 유선 연락)
- 5) 의견 제출기한 : 2023. 9. 18.(월) ~ 2023. 10. 9.(월) (22일간)
- 6) 문의 및 제출
 - 우 편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 2층 서울중구청 주차관리과 우)04558
 - 유 선 : 서울 중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1팀(☎02-3396-6254)
 - 팩 스 : 02) 3396-8869
- 7)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 끝.